

국제개발협력 평가 매뉴얼

2023. 4.



국무조정실

순 서

I. 평가개요	202
1. 평가의 목적	
2. 평가의 원칙	
3. 평가의 종류	
II. 평가시스템	208
1. 평가시스템 구조	
2. 사업수행기관 평가(자체평가) 절차	
III. 평가기준	228
IV. 평가등급제	231

I. 평가 개요

1. 평가의 목적

(1) 학습 및 정책결정 기반 마련 (Learning)

- 국제개발협력 사업 평가를 통해 향후 사업 진행 시 참고할 수 있는 교훈을 도출하고, 습득한 교훈은 ▲국제개발협력사업의 계속 추진 여부를 결정할 때,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추진전략을 효율적으로 수정할 때, ▲새로운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정책 및 전략을 수립할 때 유용한 정보로 활용된다.
- 따라서 평가를 통해 유용한 교훈을 도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교훈이 실질적으로 국제개발협력사업 추진 시 적용되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2) 대국민 책무성 확보 (Accountability)

-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위임한 국민에게 평가 결과, 과정 및 관련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의 책무성을 제고하고 국민적 지지기반을 확보한다.
- 평가에서의 책무성이란, 국제개발협력사업의 결과와 영향력에 대한 책무를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회계·법적 원칙을 준수하여 국제개발 협력사업 재원을 집행하고 그에 대한 감사를 받는 것과는 다른 개념으로서, 예산의 분배·할당·사용 문제에 대한 책무인 '재정책무성'과 구별하여 '성과책무성'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

2. 평가의 원칙

(1) 공정성 (Impartiality)

- 평가실시기관(평가전문위원회 및 시행기관)은 서로 다른 이해당사자의 입장 차이를 고려하여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평가자는 사실 확인·분석·결론 도출 등 평가 과정에 있어서 편향된 입장이 반영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정하게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평가의 신뢰도를 제고하여야 한다.

(2) 독립성 (Independence)

- 평가는 정책결정 및 사업시행과정으로부터 독립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평가실시기관은 평가자의 이해관계가 평가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평가대상과 관련된 활동의 준비과정이나 수행과정에 연관되었던 사람이나 기관이 평가팀 구성원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3) 신뢰성 (credibility)

- 평가는 전문성 및 독립성을 갖춘 평가자에 의해 투명한 절차를 거쳐 수행되어야 한다. ▲ 예산, 실시방법, 실시기간 등 평가 실시상의 제약요인을 분명히 하고, ▲ 평가방법을 포함하여 '평가계획 → 실시 → 결과 도출' 일련의 과정을 관계자에게 충분히 공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 평가참가자들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평가를 수행 하여야 한다.

(4) 유용성 (Usefulness)

- 평가결과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관심 및 필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국제개발협력 정책결정과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적기에, 적합한 방식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평가실시기관은 ▲ 평가 목적을 명확히 하고, ▲ 예상 이용자의 필요를 반영한 평가가 되도록 평가를 진행하여야 하며, ▲ 이해관계자들이 평가과정 및 결과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파트너십 (Partnership)

- 평가실시기관은 협력대상국 및 타공여국·기관, 시민사회 등 개발협력 파트너의 평가참여를 장려하며, 공동평가의 가능성과 적정성을 확인한다. 공동평가는 ▲ 평가참여자들이 상호간의 국제개발협력 절차 등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며, ▲ 더 나은 평가 방법을 개발하고 평가 관련 정보 및 결과를 공유하는데 기여하고, ▲ 협력대상국의 행정적 부담도 최소화 할 수 있어 장려된다.

3. 평가의 종류

- 평가는 평가의 실시방법, 시기 및 대상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평가는 단일사업에 대해 또는 여러 개 사업을 묶어서 수행할 수 있다.

<평가의 종류>

실시 방법	▶ 내부평가 (Internal Evaluation, Self-Evaluation)
	▶ 외부평가 (External Evaluation, 3rd-party Evaluation)
	▶ 공동평가 (Joint Evaluation)
시기	▶ 사전평가 (Ex-ante Evaluation)
	▶ 중간평가 (Interim Evaluation)
	▶ 종료평가 (End-of-project Evaluation)
	▶ 사후평가 (Ex-post Evaluation)
대상	▶ 정책 및 전략평가 (Policy & Strategy Evaluation)
	▶ 국별 평가 (Country Programme Evaluation)
	▶ 분야별 평가 (Sector Evaluation)
	▶ 주제별 평가 (Thematic Evaluation)
	▶ 형태별 평가 (Modality Evaluation)
	▶ 프로젝트/프로그램 평가 (Project/Programme Evaluation)
	▶ 기관 평가 (Institutional Evaluation)
	▶ 다자협력사업평가 (Multilateral Cooperation Evaluation)

(1) 평가 실시방법에 따른 분류

① 내부평가

- 내부평가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수행기관의 관계자들이, 해당기관이 수행하거나 해당기관과 관련된 국제개발협력정책 및 사업에 대하여 직접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외부평가

- 외부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이하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③ 공동평가

- 공동평가는 국내외의 타 공여기관과 협력대상국, NGO 등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합의한 하나의 평가방식을 적용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평가를 말한다.

(2) 평가시기에 따른 분류

① 사전평가

- 사전평가는 결과 중심 평가(result-based evaluation)를 위해 국제개발협력 사업 기획 단계에서부터 평가에 대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성과평가지표 개발 등 평가계획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② 중간평가

- 중간평가는 국제개발협력사업 진행 중에 수행되는 평가를 말하며, 사업 진행에 문제가 있거나 사업기간이 일정기간 이상인 사업 또는 단년도 계속사업에 대해 점검 등의 형식으로 선별적으로 실시한다.

③ 종료평가

- 종료평가는 국제개발협력사업 종료시점에서 이루어지는 평가를 의미한다. 평가대상과 관련된 보고서 및 사업종료보고서 등에 대한 서면 점검 형식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현지조사를 통해 보다 면밀한 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다.

④ 사후평가

- 사후평가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이 종료된 후 일정 기간 뒤(약 2~4년)에 수행하는 평가를 말하며, 주로 사업의 효과성, 영향력, 지속가능성 등을 측정하여 유사 사업에 대한 제언이나 전략적 교훈을 얻기 위해 사용된다.

(3) 평가대상에 따른 분류

① 정책 및 전략 평가

- 정책 및 전략 평가는 ODA 기본계획 등 국제개발협력사업 수행과 관련한 정책 및 전략의 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 정책 및 전략의 i)국제개발협력 동향 및 협력대상지역 개발정책 및 과제 반영 여부, ii)목표의 명확성, iii)목표달성 여부, iv)향후 정책 및 전략과의 연관성 및 지속가능성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② 분야별 평가

- 분야별 평가는 특정 분야의 국제개발협력정책 및 사업 전반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정보통신·교육·환경 등 분야별 지원 계획 및 전략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포함하여 해당분야에 대한 국제개발협력정책 및 사업의 적절성, 효과성, 효율성 등을 평가한다.
- 분야별 평가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을 분야별로 분류하여 특정시기에 시행된 사업에 대해 총괄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거나, 우리나라의 분야별 지원 정책 및 전략의 유효성과 타당성, 또는 전략 및 정책과 사업의 연계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평가전문위는 매년 4~5년 주기로 비중이 높은 분야에 대해 분야별 평가를 실시한다.

③ 주제별 평가

- 주제별 평가는 양성평등, 환경, 인권, 제도개선 등 국제개발협력 관련 특정 주제와 관련된 정책 및 사업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 주제별 평가는 선정된 하나의 주제에 대한 정책 및 전략, 국가, 분야 등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실시되는 바, 정형화된 형식 없이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 평가전문위는 주제별 평가의 하나로서 메타평가(evaluation of evaluation)를 실시할 수 있다. (평가전문위원회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

④ 형태별 평가

- 형태별 평가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사업수행 방식에 초점을 두어 수행되는 평가를 의미한다. 즉, 무상·유상 자금협력, 프로젝트, 국내초청연수, 전문가 파견, 해외봉사단파견, 지식공유사업, 개발조사 사업 등 사업형태별로 구분하여 평가하는 것이다.

⑤ 프로젝트/프로그램 평가

- 국제개발협력 개별 프로젝트 또는 특정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⑥ 기관 평가

- 평가실시기관의 ODA 사업특성 및 현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역량 등을 진단하고 기관별 개선사항 등을 도출하는 평가. 메타평가 등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⑦ 다자협력사업평가

- 다자협력사업 중 의무분담금·출자금 등 독자적인 성과관리가 어려운 사업을 제외하고, 다자성양자 사업 중심으로 해당 기구, 해당 분야 지원의 적절성, 효과성 등을 평가한다.

II. 평가 시스템

1. 평가시스템 구조

- 국제개발협력사업 평가와 관련된 기관은 평가전문위, 협조기관, 사업수행기관이다. 평가전문위와 사업수행기관(이하 “평가실시기관”)은 평가를 수행하며 협조기관은 사업수행기관의 평가계획, 평가결과 등을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가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업수행기관과 협조한다.

< 평가주체별 평가대상 >

평가주체	평가대상		수행
평가전문위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개발협력 정책 및 전략 평가 ▶ 국별(중점협력국)·분야별·주제별·형태별·기관·다자협력사업 평가 ▶ ODA 기본계획 상 중점과제 추진 성과 평가 ▶ 기타 평가전문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평가 	▶ 내부평가, 외부평가, 공동평가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수행기관 연간 평가계획 및 평가결과 심의 ▶ 사업수행기관 연간 평가결과에 따른 반영계획 및 반영계획 이행 점검 	▶ 협조기관이 사업수행기관 평가계획 및 결과 종합
사업수행기관 (자체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별 정책 및 전략, 국별, 분야별, 주제별, 형태별 평가 ▶ 개별 프로그램/프로젝트 평가 ▶ 기관평가 ▶ 다자협력사업평가 		▶ 내부평가, 외부평가, 공동평가

2. 사업수행기관 평가(자체평가) 절차

(1) 평가흐름도

사업수행기관	기관별 차년도 자체평가 대상과제 후보목록 제출 → 협조기관(기재부·외교부) 제출	(n-1년) 10월초
평가전문위	후보과제 목록 검토 및 제언	(n-1년) 10월중
사업수행기관	기관별 차년도 연간 평가계획 수립 → 협조기관(기재부·외교부) 제출	(n-1년) 10월중
협조기관	기관별 차년도 연간평가계획 접수·종합 → 평가전문위 제출	(n-1년) 10월말
평가전문위	기관별 평가계획에 대한 평가성 사정*	(n-1년) 11월
평가전문위	유·무상 연간 평가계획 심의·의결 → 국개위 보고	(n-1년) 11월
국제개발협력 위원회	연간 평가계획 의결 후 확정	(n-1년) 12월
사업수행기관	평가업무수행**, 평가결과 반영계획 이행	연중
사업수행기관	①전년도 평가결과 제출 ②전년도 평가결과 반영계획 수립 ③평가결과 반영계획 이행점검	n년 1월초
협조기관	기관별 전년도 평가결과보고서, 평가결과 반영계획, 반영계획 이행점검결과 접수·종합	n년 1월말
평가전문위	평가결과 및 평가결과 반영계획, 반영계획 이행점검의 적정성 평가 및 심의·의결 → 국개위 보고	n년 2월
국제개발협력 위원회	전년도 평가결과 의결	n년 상반기
사업수행기관	그간의 평가결과 반영계획 이행점검	n년 9월
협조기관	그간의 반영계획 이행점검결과 접수·종합	n년 9월
평가전문위	그간의 평가결과 반영계획 이행점검 보고	n년 9월

* 메타평가 결과, ODA전략,
외부지적 등을
고려하여 실시 후,
시행기관과 협의 및 조정

** 최종심의 완료된
평가계획에 따라 수행

※ 세부일정은 당해 연도 국개위 일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2) 사업수행기관 평가(자체평가) 계획수립 절차

- 사업수행기관은 기관의 사업추진현황, 최근 3년간의 평가사업, 그간의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차년도 연간평가계획을 수립한 뒤 매년 10월 초에 협조기관(무상원조-외교부, 유상원조-기획재정부)에 제출한다.
- 평가계획에는 평가대상, 평가일정, 성과지표, 평가예산, 평가방법과 종류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평가건수 설정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평가지침은 모든 시행기관이 연간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모든 시행기관은 의무적으로 자체평가를 하여야 하며, 다만 기관간 차이를 고려하여 기관의 ODA 규모 별로 최소 평가건수를 다르게 적용한다. 기관의 규모는 평가대상연도 전년도(n-1년)의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으로 산정한다.

<최소 평가건수 설정기준>

구분	평가건수
▶ 상위 (100억 이상)	▶ 연 최소 2건, 연간 사업수 또는 사업규모의 10%
▶ 중상위 (50억 이상)	▶ 연 최소 2건
▶ 중하위 (10억 이상)	▶ 연 최소 1건
▶ 하위 (10억 미만)	▶ 2년에 1번

* 평가건수 설정 시, n년 평가계획의 경우 n-1년 종합시행계획 상의 양자사업(다자성양자 포함) 수 기준을 고려하여 산정

※ 평가건수 설정기준은 매년 시달되는 자체평가 지침 우선 적용

- 연간 전체 사업수의 10%는 다수 사업을 연계·통합 평가하는 경우(예시: OO 분야 평가, 여러 국가에 추진하는 동일 사업을 묶어서 평가 등), 평가계획 제출 시 평가건수 조정 사유를 명시하여 평가건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평가대상 선정

- 평가대상은 정책 또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의 경우 종료사업, 진행중인 사업, 계획된 사업 중 가급적 평가대상연도 전년도(n-1년) 계획 상 양자사업(다자성양자 포함)의 사업비 상위 20% 수준 이내에서 선정한다.

- 평가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직전년도 평가 사업과 최근 3년 이내 유사한 사업이 평가를 받은 사업(시행기관이 사업간 유사성 등을 유연하게 판단 가능)은 제외한다.
- 평균 사업규모가 작거나(초청연수 등) 다국가 대상의 소규모 프로젝트·컨설팅 사업 등은 동일 사업 또는 유사 사업을 같이 평가하거나, 해당 사업을 여러 기간에 걸쳐 평가(예시: 최근 3년간 OO 연수사업 평가, 재난관리사업평가 등)하여 합산된 사업비를 적용, 20%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 다만, 사업비 상위 20% 수준 이내가 아니더라도 해당 사업의 전략적 중요성, 규모가 큰 타 사업을 평가대상으로 선정하기 어려운 사유 등을 평가계획에 적시하여 평가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 평가대상 선정절차 요약 >

- ① 평가계획 전년도의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을 참고, 사업비 상위 20% 수준의 양자사업(다자성 양자사업 포함) 규모 산출
 - ② 종료사업, 진행중 사업, 계획된 사업 중 20% 수준 이내에서 평가대상 선정 (단일사업 또는 유사사업의 묶음으로 선정)
 - ③ 직전년도 평가 및 최근 3년 이내 유사한 평가가 진행된 사업 제외
 - ④ 사업비 상위 20% 수준 이내에서 선정하기 어려운 경우* 평가계획에 사유를 적시하여 협조기관에 제출
- * 사업비 상위 20% 이내 사업에 대해 직전년도 또는 최근 3년간 유사사업에 대한 평가 기 추진, 사업비는 작으나 전략적 중요성이 높음 등

○ 평가대상 선정시,

가. 당해 연도 위원회평가의 전략, 분야, 국가 등에 부합하는 평가

나. 성과부진 사업, 중간평가 미흡사업, 재외공관 모니터링 결과 부실사업, 국회·감사원 등의 외부 지적사업

다. 국가협력전략, 분야별·기관별 중기 또는 연도별 정책 관련 대상 등을 우선 선정하되, ▲정책연관성 ▲개혁성 ▲확대적용가능성 ▲유용성 ▲평가가능성 ▲비용대비타당성을 고려한다.

③ 평가계획 수립

< 1단계 - 부처별 대상과제 후보목록 작성 >

'00년 (부처명) 자체평가 대상 과제 후보목록

I. ODA 사업추진 개요

기간: ODA 시행 총 기간, 예시) 2000년~현재 (10년)

예산: 총예산('00년 예산), 사업수

- 누적 총예산 분야별·국가별 등 비중('20년 시행계획 기준 분야별·국가별 비중)

II. 그간 평가실시 현황(최근 5년)

연번	평가 연도	사업명	평가구분		
			실시방법	시기	대상
1	2016	라오스 모자보건사업	외부평가	종료평가	프로젝트 평가
2					

III. '00년 평가방향

예시) 중장기 ODA 전략 및 SDGs 이행 지원

- 예시) 지역사회 보건(SDG 1) 및 교육(SDG 4) 관련 종합평가를 통해 연계 SDGs 이행은 물론, 우리 중장기 ODA 전략 추진에 도모

IV. 평가대상 목록

※ 「Ⅲ. 평가대상 과제 선정 - 평가건수」 기준의 2~3배수 작성

① 평가사업명

- (사업 개요) 사업 대상국 및 주요 내용 작성
- (사업 기간) 사업 시작 및 종료 시점 작성
- (총사업비 / '00년도 예산) 총사업비 및 '00년도 예산 작성
- (선정사유) SDGs 4 “양질의 교육 제공” 이행을 위한 ODA 사업 분석 및 평가 필요
- (평가구분) 방법/시기/대상 작성(예:외부평가/사후평가/분야별 평가)

② 평가사업명

- (사업 개요) 사업 대상국 및 주요 내용 작성
- (사업 기간) 사업 시작 및 종료 시점 작성
- (총사업비 / '00년도 예산) 총사업비 및 '20년도 예산 작성
- (선정사유)
- (평가구분)

V. 평가대상 미선정 사유

※ 「Ⅲ. 평가대상 과제 선정 - 선정기준」에 따라 "20년 종료사업 중 상위 20% 사업, 정부 ODA 전략과 부합하는 사업임에도 선정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 모두 작성

① 평가사업명

- (미선정사유) 미선정 사유 작성(예 : '00년에 평가 既 실시)

② 평가사업명

- (미선정사유)

'00년 (부처명) 자체평가 추진계획(안)

I. 개요

- 평가 관련 내부 지침: 유 무
-
-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
- 평가 담당 인력 및 평가 예산
-

II. '00년 평가방향

- 예시) 중장기 ODA 전략 및 SDGs 이행 지원
 - 예시) 지역사회 보건(SDG 1) 및 교육(SDG 4) 관련 종합평가를 통해 연계 SDGs 이행은 물론, 우리 중장기 ODA 전략 추진에 도모

III. 평가대상

① 평가사업명

- (선정사유) SDGs 4 “양질의 교육 제공” 이행을 위한 ODA 사업 분석 및 평가 필요
- (평가방법) 외부평가/사후평가/분야별 평가/ 평가 예산 有
- (평가지기) 2021.1~2021.12 (12개월)

② 평가사업명

- (선정사유)
- (평가방법)
- (평가지기)

IV. 향후계획

- 평가시스템, 평가품질, 평가역량 강화 관련 주요 추진계획 등

'00년 (부처명) 자체평가 미평가 사유

I. 평가대상 사업 리스트

□ 예시) 개발도상국 법제정비지원 사업

○

II. 당해연도 미평가 사유

① 개발도상국 법제정비지원 사업

- (사유)예시) 다년간 사업으로 '20. 상반기에 이미 1단계 사업진행성과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한 바 있음
- '21년 라오스 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상정을 목표로 하는 바, 예상 국회 발효 시기인 '22년에 사후평가를 실시함이 전체 사업을 조망할 수 있어 평가효과성·적절성 측면에서 유의미함

② 평가사업명

- (사유)

III. 향후계획 (미평가 사업들에 대한 차년도 평가 계획 적시)

(예시)

- '22.10월 : 개발도상국 법제정비지원사업 사후평가 계획 수립
- '23.1~12월 : 개발도상국 법제정비지원사업 사후평가 실시
- '24.1월 : 개발도상국 법제정비지원사업 사후평가 결과보고

※ 하위기관의 자체평가 해당년도 미평가 사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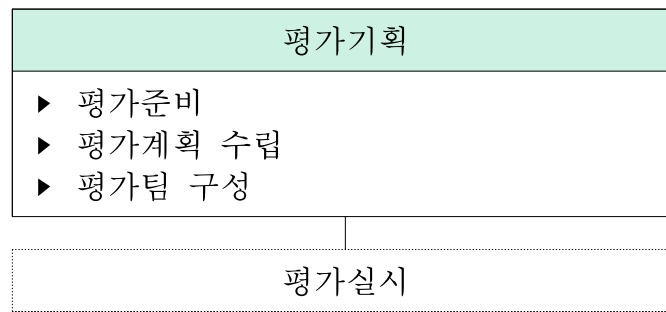
< 3단계 - 평가건별 계획서 작성(예시) >

평가사업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OO 사업 사후평가, OO분야 종합평가 등 																																																																																									
평가배경 및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 배경 및 중요성 평가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p>(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n년도 사업 사업비 상위 20% 수준 이내 사업이며, 수원국 내에서도 대규모 사업으로 평가 효과성 및 필요성이 높음 내년도 추진될 후속사업을 위한 교훈 도출, 해당 사업의 사후관리 목적 																																																																																									
평가대상 및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명 (사업기간 / 사업규모) 사업명 (사업기간 / 사업규모) * 구체적인 평가대상 사업 및 평가범위 작성 ①다수 사업 평가 시, 평가대상 사업 전부 명시 ②사업기간/사업규모는 평가대상에 한정(단년도 계속사업 중 최근 3년간 사업현황 평가시, 3년에 해당하는 기간 및 규모 적시) 																																																																																									
평가구분	실시방법	①내부평가(), ②외부평가(), ③ 공동평가() * 외부, 공동평가시의 평가 수행 방법(외부기관 선정 등)																																																																																								
	시기	①사전평가() ②중간평가() ③종료평가() ④ 사후평가()																																																																																								
	대상	①정책 및 전략평가(), ②국별평가(), ③분야별 평가(), ④주제별 평가(), ⑤형태별 평가(), ⑥프로젝트/프로그램 평가()																																																																																								
평가예산	백만원 * 반드시 명시																																																																																									
평가수행기간	'00. ~ (개월) * 연간 추진일정 상 평가수행기간																																																																																									
연간 추진일정	<table border="1"> <thead> <tr> <th>주요일정</th> <th>1월</th> <th>2월</th> <th>3월</th> <th>4월</th> <th>5월</th> <th>6월</th> <th>7월</th> <th>8월</th> <th>9월</th> <th>10월</th> <th>11월</th> <th>12월</th> </tr> </thead> <tbody> <tr> <td>평가계획수립</td> <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 </tr> <tr> <td>평가 공고 및 평가팀 선정</td> <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 </tr> <tr> <td>평가수행</td> <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 </tr> <tr> <td>현지 사전조사 및 평가</td> <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 </tr> <tr> <td>평가보고서 품질심사 확정</td> <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 </tr> </tbody> </table>												주요일정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가계획수립													평가 공고 및 평가팀 선정													평가수행													현지 사전조사 및 평가													평가보고서 품질심사 확정												
	주요일정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가계획수립																																																																																									
	평가 공고 및 평가팀 선정																																																																																									
	평가수행																																																																																									
현지 사전조사 및 평가																																																																																										
평가보고서 품질심사 확정																																																																																										
평가기준	OECD DAC 평가기준 적용여부 (O , X)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 지표		실적 및 목표치			2022 목표치 산출 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020	2021	2022																																																																																					
	영유아 사망률	25%	23%	20%	사업대상 인원 전년대비 50% 증가	$\frac{\text{해당지역 6세미만 사망 아동 수}}{\text{해당지역 6세미만 전체 아동 수}} \times 100$	해당 국가 보건부 자료																																																																																			
* 원칙적으로 사업별 시행계획 참고, 필요시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재설정																																																																																										
성과지표 내용																																																																																										
기타 (기대성과, 유의사항, 고려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시) 본 사업은 신북방 정책의 대표 지역인 우즈베키스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정부의 신북방 정책에 맞추어 한-우즈베키스탄의 친선 관계 강화할 것으로 기대 (예시) 본 사업은 중점협력국가전략/해외공관 모니터링 결과부실/국회·감사원 등 외부 지적사업으로 자체평가 대상 사업으로 선정 																																																																																									
담당자(연락처)	(☎ -)																																																																																									

(3) 평가계획

① 개요

- 평가계획은 개별평가 수행의 첫 번째 단계로 평가관련 이해관계자와의 면담 및 관련문서 분석 등을 통해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평가팀을 구성한다.



② 평가준비 및 평가계획의 수립

- 평가실시기관의 평가담당자는 연간평가계획에 따라 평가건별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한다.

- 평가 개요
- 평가목적
- 평가대상 개요
- 평가 방법론 (Methodology)
- 평가수행방법 (외부기관 선정 등)
- 추진일정
- 평가예산

- 평가는 평가실시기관이 해당기관의 인력을 활용하여 내부적으로 실시하거나,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실시, 또는 국내외의 타 공여기관과 협력대상국, NGO 등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합의한 하나의 평가방식을 적용하여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 단, 사업규모가 큰 중위기관(10억 이상) 이상은 원칙적으로 외부평가를 실시하거나, 예산상의 제약 또는 평가대상 사업의 규모가 작아 내부평가로 추진하는 경우에도 평가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과정에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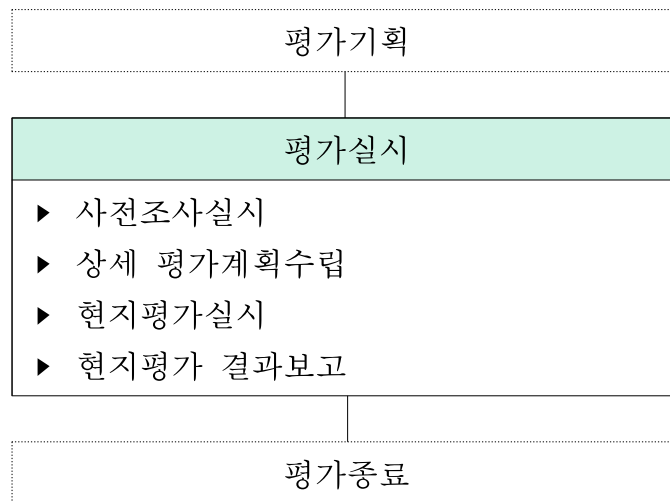
*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자체평가위원회에서 평가대상 선정 또는 평가결과 심의, 현지조사 및 결과 도출에 전문가 참여 등

- 외부기관을 선정하여 평가팀을 구성하기로 하였다면, 평가계획에 외부평가 여부, 평가예산, 추진일정(용역기관의 선정-수행-결과보고) 등을 명시한다.

(4) 평가실시

① 개요

- 내부평가를 수행하는 경우, 평가기획단계에서 작성한 평가계획서를 아래와 같은 사전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상세 평가계획으로 보다 구체화 한 뒤, 동 상세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수행한다.
- 외부평가를 수행하는 경우, 업무수행계획서에 의거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현지평가를 수행하고 보고하는 업무가 수행된다. 평가의 방법론적인 부분은 외부기관을 통해 수행되며 평가실시기관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원활한 평가수행을 지원한다.



② 사전조사실시

- 평가팀은 업무수행계획서 또는 평가계획서에 따라 사전조사를 수행한다. 사전조사는 국내조사와 현지조사로 나누어 질 수 있다. 평가팀은 국내조사를 통해 관련 문헌 및 자료를 검토하고 이해관계자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하여 세부평가모델을 수립하고 평가방법을 확정한다. 평가의 범위가 넓고 복잡한 경우, 현지사전조사를 통해 평가관련 사항들을 확인하여 평가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사전조사에서 평가팀이 수행하는 업무는 아래와 같다.

▶ (문헌조사) 평가대상 관련 주요문서 검토

- 사업종료보고서, 국별전략, 분야별 전략, 관련 분야의 이전 평가보고서, 타 원조기관의 유사 분야 평가보고서, 타 원조기관의 전략·프로젝트 등 검토 및 분석

▶ (인터뷰) 평가대상 관련자 인터뷰

- 사업수행담당자, 프로젝트매니저, 정책관련 용역기관 담당자, 관련 국내 전문가 등 국내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평가팀은 필요시 현지사전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현지사전조사를 통해 평가팀이 수행해야하는 기본적인 업무는 아래와 같다.

- 협력대상국 측 평가담당자 확인 및 의사소통채널 수립
- 현지평가일정수립
- 평가방법 및 수단에 대한 협력대상국 측 동의 확보
- 평가관련 협력대상국 측 협조사항 확인
- 현지평가지 면담 및 조사 대상자 확인
- 기타 평가추진관련 현지상황 사전 파악*

* 통/번역 관련사항, 교통편 확보, 현지컨설턴트 섭외 등

- 현지사전조사를 추진할 때, 평가팀은 현지사전조사출장계획을 준비하고, 조사후에는 일별업무추진결과 및 협력대상국과의 협의사항을 기록하고 양 측이 서명으로 확인한 회의록(minutes)을 포함한 현지사전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 제출한다.

③ 상세 평가계획수립

- 평가팀은 국내 및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수행과 관련된 사항을 명확히 조정하고 평가모델을 확정된 뒤 사전조사를 통해 수집된 새로운 정보 등을 바탕으로 상세 평가계획을 수립한다.

가. 평가기준별 세부 평가질문 개발

- 상세 평가계획 수립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매우 일반적이고 모호한 DAC 6대 평가기준 및 관련된 cross-cutting issue(환경, 젠더, 인권 등)의 보편적 질문들을 평가대상에 맞춰진 특정한 평가질문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 DAC 평가기준 등 평가기준의 기본 질문은 매우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바, 평가팀은 우선 평가대상의 특징, 평가시기, 주요평가사항 등을 고려하여 상황에 맞는 세부 평가질문들을 각 평가기준별로 개발한다.

나. 세부 평가질문-평가방법론 연계

- 다음 단계에서는 평가기준별로 개발된 평가질문들을 평가방법론과 연계한다. 이 때 각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가장 효율적으로 알아낼 수 있는 정보 수집 및 조사 방법을 선택하여 결정한다.
- 이 단계에서 연계된 평가질문과 그에 따른 방법론을 표로 작성하는 평가 매트릭스(Evaluation Matrix)를 사용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상세 평가계획 수립의 효율적 및 체계적 정리에 매우 유용하여 국제개발협력 평가에서 주로 사용된다.
- 평가매트릭스는 평가기준별로 동 기준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해 조사 분석되어야 할 사항들인 하부카테고리(Sub-category), 각 하부카테고리별로 체크되어야 할 평가질문(Evaluation Questions), 그리고 각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취해야 하는 조사방법(Method)으로 구성된다.
- 가령, 평가대상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한 점검 항목(하부카테고리)은 평가대상이 협력대상국 개발정책을 반영하는지, 우리 정부의 정책 및 우선순위에 부합하는지, 국제개발협력 동향 및 전략과 부합하는지 등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각각의 항목들을 체크하기 위한 구체적인 평가질문들을 도출한 후, 각 평가질문들에 대해 가장 적합한 답변을 얻을 수 있는 방식으로 조사방법(Method)을 선택하여 평가를 진행한다.

<평가매트릭스양식(예시)>

평가기준 (Evaluation Criteria)	하부카테 고리 (Subcategories)	평가질문 및 범위 (Evaluation Questions)	조사방법 (Method)
적절성	개발 전략, 우 선 순 위 와 부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은 협력대상국 개발전략, 수혜자 우선순위에 부합하는가? · 우리 정부의 상위개발전략, 시행기관 전략, 대외전략에 부합하는가? · 취약계층 수요를 반영하였는가? 	인터뷰 문헌조사 FGI
	사 업 설 계 및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DM 상 사업논리는 체계적이고 달성가능한가? · 주요이해관계자의 우선순위가 사업목적, 논리, 이행수단에 반영되었는가? 	인터뷰 문헌조사 FGI
	위험관리 및 환경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 사회, 환경 등 다면적 지원환경을 분석, 반영하였는가? · 사업기간 동안 발생한 환경변화에 유동적으로 대응하였는가? · 사전적 위험분석, 대응방안에 따른 관리가 이루어졌는가? 	인터뷰 문헌조사 FGI

- 이후 평가보고서에서 평가결과를 설명하는 장은 상기 평가매트릭스에서 하부 카테고리별로 작성된 평가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구성한다.
- 이제 평가팀은 국/내외 조사결과 및 연계된 세부 평가질문-평가방법(또는 평가매트릭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 상세 평가계획서를 작성하고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 ▶ 사업이나 프로그램의 논리모형
 - 대상사업이나 프로그램의 투입, 과정, 산출물, 예상효과, 실제영향 등을 OECD /DAC의 평가 6대 기준 및 성주류화, 환경평가기준에 입각하여 분석한 모델
 - ▶ 상세평가방법
 - 데이터 수집 전략 및 방법, 분석의 틀, 보고체계의 디자인, 접근법, 적절성을 포함하는 평가방법 기술
 - ▶ 연계된 세부 평가질문-평가방법(또는 Evaluation Matrix)
 - 용역업무수행계획서 또는 평가계획서에 포함된 보편적 질문에서 출발하여 세부적으로 연결되는 계층적 질문 모델
 - ▶ 조사일정
 - 업무수행계획서 또는 평가계획서에서 발전된 세부업무수행일정
 - ▶ 의사소통계획
 - 평가관련 이해관계자를 모두 포함하는 의사소통채널
- 평가방법에 설문지 조사법(표본 또는 전수)이 포함되어 있다면, 평가팀은 현지 평가 최소 1개월 전 설문지를 관련기관에 송부완료 하여 현지평가전에 설문 결과를 회수, 분석 후 현지평가를 실시한다.

④ 현지평가 실시

- 평가팀은 평가실시기관의 내부절차에 따라 승인을 득한 현지평가계획서에 따라 현지평가를 실시한다.
- 현지평가 최종일에는 협력대상국 측과 평가결과를 정리하는 종료회의(wrap-up meeting)를 실시하여 주요확인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회의록(Minutes)을 작성하여 양측이 확인한다.

(5) 평가종료

① 개요

- 평가종료단계에서는 계획에 따른 평가활동을 모두 종료하고 산출물로서 평가보고서를 작성·확정하고 평가결과 제출 양식과 최종 평가보고서를 협조기관에 제출한다.



② 평가보고서(안) 작성

- 평가팀은 평가의 최종 산출물로 평가보고서(안)을 평가실시기관에 제출한다. 평가보고서(안)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평가보고서(안)>

- 표지 (Title Page)
- 목차 (Contents)
- 평가보고서 요약 (Executive Summary)
- 평가의 개요 및 배경 (Introduction with background)
- 평가방법론 (Methodology used)
- 평가대상 분석 (Evaluation Object Description and Analysis)
- 평가내용(Evaluation and Conclusion)
- 교훈 및 제언(Lessons Learned and Recommendation)
- 부록(Appendices)

③ 평가보고서(안) 심사

- 평가실시기관은 외부평가의 경우 용역기관의 평가보고서(안)에 대하여 보고서 품질관리 점검 목록 등을 기준으로 아래사항 등을 일차적으로 검토하고, 각 평가실시기관의 내부절차에 따라 심사를 실시한다.
 - ▶ 평가보고서(안)이 계약서 및 상세 평가계획서에 따라 적절히 작성되었는지 확인
 - ▶ 평가보고서(안)이 평가실시기관이 제시한 보고서양식에 맞추어 적절히 구성되었는지 여부 확인
 - ▶ 평가보고서(안)의 내용이 평가실시기관이 제시한 보고서 양식에 제시된 내용기준에 맞추어 적절히 기술되었는지 확인
 - ▶ 평가보고서(안)이 상세 평가계획 상의 평가질문들에 대해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며 적절한 답변을 제시하고 있는지 확인
- 내부평가의 경우, 평가보고서가 평가계획에 따라 충실하게 작성되었는지, 당초 설정한 성과지표에 대한 측정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평가결과 환류 과제가 적절히 도출되었는지를 자체적으로 확인한다. 이 때, 10억 이상 기관은 평가결과 심의에 외부전문가를 포함시켜 평가의 독립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평가보고서 확정

- 상기 평가종료 과정은 평가연도 연말까지 완료되어야 한다.

(6) 평가결과 심의 및 환류

① 평가결과 심의

- 각 사업수행기관은 기관 내 승인을 득한 평가보고서를 해당 협조기관에 제출하고, 협조기관은 이를 종합하여 평가전문위에 제출한다.
- 평가전문위는 평가전문위가 실시한 평가의 결과 및 각 수행기관이 실시한 평가결과보고서에 대한 심의 결과를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보고한다.

<부처별 평가 건별 평가결과 제출(양식)>

평가사업명		○ 기 수립·확정된 자체평가계획 참조												
평가배경 및 목적		○ 기 수립·확정된 자체평가계획 참조하되 실제 추진내용 작성 ○												
평가대상 및 범위		○ 기 수립·확정된 자체평가계획 참조하되 실제 추진내용 작성												
평가구분	실시방법	①내부평가(), ②외부평가(), ③ 공동평가() * 외부, 공동평가시의 평가 수행 방법(외부기관 선정 등)												
	시기	①사전평가() ②중간평가() ③종료평가() ④ 사후평가()												
	대상	①정책 및 전략평가(), ②국별평가(), ③분야별 평가(), ④주제별 평가(), ⑤형태별 평가(), ⑥프로젝트/프로그램 평가()												
평가등급제		적용(), 적용안함(), 해당사항 없음() * 「국제개발협력 평가 매뉴얼」 평가등급제 참조						등급 및 점수 ()						
평가예산		백만원												
평가수행기간		'00. ~ (개월) * 연간 추진일정 상 평가수행기간												
연간 추진일정	주요일정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평가계획수립													
	▪ 평가 공고 및 평가팀 선정													
	▪ 평가수행													
	▪ 현지 사전조사 및 평가													
▪ 평가보고서 품질심사 확정														
		* 기 수립·확정된 자체평가계획 참조하되 실제 추진내용 작성												
평가방법		○ 평가기준, 매트릭스, 방법론(문헌조사, 현지 심층면접 등) 등 제시 ○												
평가결과		○ 주요내용 작성 ○												
대표적 성과지표		○ 성과지표 : 기 수립·확정된 자체평가계획 참조 ○ 목표 대비 달성도 : (목표) → (달성) ○ 성과지표 기준치 :												
사업 추진 성과		○ 대표적 성과사례 작성												
제언사항		○ 제언 및 교훈사항(신북방·신남방 정책 기여, 일자리 창출 기여 가능시 현시) ○ (예시) 본 사업은 신북방 정책의 대표 지역인 우즈베키스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정부의 신북방 정책에 맞추어 한-우즈베키스탄의 친선 관계 강화												
현장 의견		○ (수원국 정부/세외공관/수혜자/단체기구/현지언론 등) 배제 시 사유 명시												
평가결과 반영계획 과제명		○ 제언 및 교훈사항으로부터 평가결과 반영계획을 도출하는 경우, 과제명 기입 도출하지 않는 경우, 없음으로 표시												
평가 미추진 또는 변경 사유														
담당자 연락처														

* 평가보고서 원문은 증빙자료로 제출(필수)

② 평가결과 반영계획 수립

- 평가실시기관은 평가를 통해 도출된 제안사항을 검토한 뒤 관련 내부 부서 및 외부기관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하여 평가결과반영(feedback)계획을 수립한다. 평가실시기관은 동 계획을 해당 협조기관을 통해 평가전문위에 제출한다.
- 평가전문위는 각 평가실시기관의 평가결과 반영계획을 심의하여 환류과제의 적절성·중요성 등을 검토 후 수정·보완하여 평가전문위에 보고하여 확정한다.

< 부처별 반영계획 개요 및 세부 이행내용 작성(양식) >

'00년 자체평가 환류(Feedback) 과제 개요

① 자체평가 환류현황

- '00년 자체평가 건수 : 총 00건 (국별평가 0건, 주제별 평가 0건 등)
- 환류과제 채택 결과 : 총 00건 제안 중, 00건 최종 채택

② 환류과제 세부현황

과제 번호	이행 과제명	기한	담당 부서 (담당자)	비고*
◎ 평가과제명				
I - i - 1	기관에서 추진할 과제명 기입(평가 결과 제안사항 아님)	00년 00월		
I - i - 2				
I - ii - 3				

* 협조 기관·부서, 필요시 간략한 과제 부연 설명 등 특이사항 기재

③ 향후 조치계획

-
-

이행과제 추진 계획

번호	평가 제언사항	세부 이행과제	담당 부서 (담당자)	기한
I. 평가 과제명				
i		1.		
		2.		
ii		3.		
iii
II.				
i
ii

이행과제 미채택 사유

번호	평가 제언사항	비고
I. 평가 과제명		
i	...	채택이 어려운 사유 (간단히 작성)

이행과제 세부 내용

○ (I-i-1)

- (필요성) ...

- (주요내용) ...

○ (I-ii-2) ...

- (필요성) ...

- (주요내용) ...

이행과제 추진시 기대효과(성과)

○

○

③ 평가결과반영 (Feedback)

- 평가실시기관은 평가결과가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평가실시기관은 평가결과반영을 제도화할 수 있도록 각 기관별로 내부평가 지침 및 시스템을 마련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 각 사업수행기관은 평가결과반영계획의 이행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협조기관을 통해 평가전문위에 제출한다.

< 부처별 반영계획 개요 및 세부 이행내용 작성(양식) >

1. 완료과제 현황

* 이행과제 추진실적과 성과를 증빙할 수 있는 문서 제목을 제시하되, 해당 서류는 별첨으로 제출

- '17년 자체평가결과 이행과제 0건

기관명	이행과제	추진실적

- '18년 자체평가결과 이행과제 0건

기관명	이행과제	추진실적

2. 이행 지연 과제 현황

- '17년 자체평가결과 이행과제 0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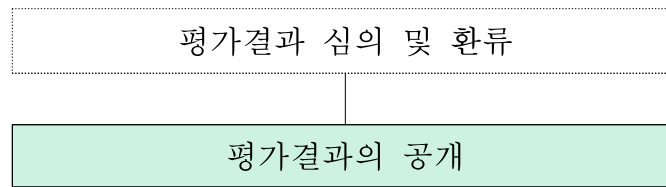
기관명	이행과제	추진실적

- '18년 자체평가결과 이행과제 0건

기관명	이행과제	추진실적

- (이행현황) *지연 또는 미추진 사유*
- (조치계획) *지연 또는 미추진 과제의 완료 시한 연장 및 조치계획 등 구체적 방안 제시*

(7) 평가결과의 공개



- 평가전문위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평가결과 심의 결과를 보고하고, 1개월 이내에 전체 기관의 평가보고서를 ODA KOREA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평가실시기관은 개별적으로 평가결과 보고회, 토론회 등으로 평가결과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자체 홈페이지 게재, 수원국 이해관계자 및 OECD DAC 평가네트워크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을 통해 평가결과를 국민, 협력대상국 등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하는 노력을 지속 실시하여야 한다.
 - 특히, 전문기관 용역에 의한 외부평가는 최소 평가보고서 요약본을 영문 또는 제2외국어로 번역하여 수원국 관계자에 공유하여야 한다.
 - 다만, 평가결과의 공개가 ▲향후 추진될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저해하는 경우 또는 ▲협력대상국 정부와의 관계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내 제도개선 및 연구·학술 목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없는 경우 등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평가실시기관은 평가결과 공개의 예외가 필요한 사유를 평가결과에 표시하고, 평가전문위가 평가결과와 함께 심의하여 결정한다. 단, 비공개 대상으로 구분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추후 상황의 변경으로 공개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공개한다.

III. 평가 기준

-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평가는 OECD/DAC의 6대 평가기준*을 고려하여 실시하게 된다. 다만, 평가의 범위, 시기 등에 따라 동 기준을 모두 적용하기 어렵거나, 환경, 성주류화 등 기타 평가기준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평가 담당자는 평가의 목적과 성격, 용도 등을 고려하여 각 평가별로 중점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기준을 선정하고 이에 따른 세부평가질문을 작성한 뒤 평가를 수행한다.

- 중점적으로 평가 되어야 할 기준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각각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중점 평가기준 선정을 위한 확인사항(예시)>

기준	확인사항
적절성	· 평가대상사업은 복잡다단하고 취약한 환경에서 추진되었는가?
효과성	· 평가대상사업의 목적 달성여부와 정도를 측정해야하는가?
효율성	· 평가대상사업의 예산 활용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한가?
영향력	· 평가대상사업의 의도하거나 의도하지 않은 상위 효과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가?
지속가능성	· 평가대상사업의 효과가 지속될지 확인하는 것이 가능한가?
일관성	· 평가대상사업에는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관여되어 있는가?

(1) 적절성 (Relevance)

- 적절성이라 함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협력대상국의 개발 우선순위·수요·정책, 우리 정부의 정책, 지원환경 및 변화에 부합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평가대상 사업이 SDGs 등 국제사회 개발목표를 반영하는지와 초기 사업 설계와 구성의 적절성도 함께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한다.

(2) 효율성 (Efficiency)

- 효율성이라 함은 투입된 자원 대비 국제개발협력의 성과가 경제적 의미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나타났는가의 정도를 표시하는 것으로, 투입자원 대비 성과가 클수록 효율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 사업의 비용이 얼마나 되는가, 목표가 계획된 시간 내에 달성되었는가, 다른 대안들보다 적은 비용으로 큰 성과를 거두었는가 등을 평가한다.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예산과 기간이 적절히 조정되었는가도 효율성을 측정하는 기준이 된다.

(3) 효과성 (Effectiveness)

- 효과성이라 함은 국제개발협력사업의 목표 달성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업 초기에 설정된 산출물 목표, 성과목표를 구분하여 초기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측정하여 평가한다.

- 목표 달성여부 및 정도에 기여하는 요인을 검토하고, 분리지표를 활용하여 사업혜택이 취약계층에게도 공평히 배분되었는지를 추가적으로 파악하여 등급을 부여한다.
- 일반적으로 종료평가 시에는 산출물(output) 목표까지, 사후평가 시에는 성과(outcome) 목표까지 달성여부를 측정할 수 있다.

(4) 영향력 (Impact)

- 영향력이라 함은 국제개발협력의 결과 직·간접적으로 초래된 지역적·사회적·경제적·환경적·제도적 변화 등 거시적이고 포괄적 변화에 대한 평가이다.
- 사업내부요인과 외부환경적 요인으로 인한 변화를 구분하고, 긍정적 변화와 부정적 변화, 의도한 결과와 의도하지 않은 결과도 모두 포함한다. 사업의 확장 가능성과 부정적 영향이 있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가 있었는지도 검토한다.

(5)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 지속가능성이라 함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종결된 후에도 사업의 효과가 지속되는 정도를 의미한다. 즉,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향후에도 유지될 잠재성이 있는지, 사업의 긍정적 영향력이 지속적일 것인지에 대한 평가이다. 이를 위해 수행기관의 인적·제도적·재정적 역량, 위험관리 계획을 검토하고 사업을 통한 잠재적 상쇄효과도 검토한다.

(6) 일관성 (Coherence)

- 일관성이라 함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국내외 다른 국제개발협력 사업과 중복성 없이 연계되어 시너지효과를 창출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 국내 ODA 시행기관 사업이 ▲기관 내 기타사업과 연계되었는지, ▲타 기관 사업에 연계되었는지, ▲정책일관성 차원에서 외교/안보/환경/통상 등 ODA의 정책과 연계되는지를 평가하는 내적 일관성(internal coherence), 타 공여국 및 공여기관 사업에 연계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외적 일관성(external coherence)으로 구분된다.

IV. 평가 등급제

(1) 개요

- 평가등급제의 목적은 사업수행기관의 사업평가 수행 시 결과를 정량화 할 수 있는 평가등급제*를 도입하여 ▲평가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 ▲사업 간 비교가 용이하도록 하며 ▲사업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며, 주체, 대상, 기준, 방법 등은 아래와 같다. 주로 사후평가에 적합하지만, 중간평가 및 종료평가에서도 기준을 조정하여 선택적으로 활용 가능하다.

* 제21차 국개위 「자체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결과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추진

< 평가등급제 주요 내용 >

- ▶ 실시주체 : ODA 사업수행기관
- ▶ 주 평가대상 : ODA 수행기관 프로젝트 사업 중 **사후평가 대상사업**
 - * 종료평가, 중간평가 등에서도 평가기준을 조정하여 활용 가능
- ▶ 평가기준* : ①적절성 ②효율성 ③효과성·영향력** ④지속가능성 ⑤일관성
 - * OECD DAC 평가기준 개정('19.12월)에 따라 국내 평가기준 변경
 - ** 사후평가인 점을 감안하여 효과성과 영향력을 묶어 하나의 기준으로 평가
- ▶ 평가방법 : 5개 평가 기준의 각 항목에 점수를 책정하고, 기준별 평균 점수를 산출한 후, 산출된 점수를 종합하여 최종 등급 부여
- ▶ 평가자료 : 사업 보고서, 종료 평가, 설문조사, 사업 관계자 면담 자료 등

(2) 평가등급 산정

- 평가자는 5개 평가 기준 각 항목에 대해 1~4점까지 점수를 부여한다. 기준 별로, 각 항목의 점수를 더하고 항목 수로 나누어 평균 점수를 구한 후 각 기준 평균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을 산출한다.

<평가 기준별 점수 체계>

기준	항목	구분	평가값				
적절성	· 수원국 개발전략 및 수요와의 적합성 우리정부 지원전략과의 적합성	매우 적절	4	4	3	2	1
		적절	3				
	· 사업 설계 및 구성의 적절성	일부 적절	2				
	· 환경변화 대응, 위험관리 적절성	미흡	1				
효율성	· 사업 비용의 효율성	계획된 비용 범위 내 완료	4	4	3	2	1
		계획된 비용의 101~120%	3				
		계획된 비용의 121%~150%	2				
		계획된 비용의 150% 초과	1				
	· 사업 기간의 효율성	계획된 기간 내 완료	4	4	3	2	1
		계획된 기간의 101~120%	3				
		계획된 기간의 121%~150%	2				
		계획된 기간의 150% 초과	1				
	· 투입대비 성과 달성 정도	매우 효율적	4	4	3	2	1
		효율적	3				
		일부 효율적	2				
		미흡	1				
효과성/ 영향력	· 계획한 산출물, 성과 목표 달성 정도	당초 계획의 90%이상 달성	4	4	3	2	1
		70% 이상 90% 미만 달성	3				
		50% 이상 70% 미만 달성	2				
		50% 미만	1				
	· 사업성과의 취약계층 포용성 및 형평성 정도	매우 포용적	4	4	3	2	1
		포용적	3				
		일부 불평등	2				
		매우 불평등	1				
	· 사회·경제·제도에 대한 영향력	매우 중대함	4	4	3	2	1
		중대함	3				
		일부 중대함	2				
		미흡	1				
지속 가능성	· 재정적·제도적 역량 여부	매우 지속가능	4	4	3	2	1
	· 인적역량·유지관리 체계 여부	지속가능	3				
		일부 지속가능	2				
	· 계획대비 실제 지속가능성	지속 불가능	1				
일관성	· 내적 일관성	매우 일관적	4	4	3	2	1
		일관적	3				
	· 외적 일관성	일부 미흡	2				
		미흡	1				

- 산출된 총점이 18점 이상이면 매우 성공적, 14점 이상 18점 미만이면 성공적, 10점 이상 14점 미만이면 부분성공적, 10점 미만이면 미흡으로 표시한다. 이 같은 등급별 정의는 다음 표와 같다.

< 종합 평가 등급 >

평가 등급	점수	정의
매우 성공적	18점 이상	당초 계획했던 성과를 초과달성 했거나, 초과 달성된 성과가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취약계층 포용성이 명확한 상태
성공적	14점 이상 18점 미만	일부 성과 미달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사업의 단기 및 중장기 성과는 달성되었으며, 사업의 당초 추진 사유가 적절하게 유지되며 실행 및 운영과정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태
부분 성공적	10점 이상 14점 미만	당초 계획했던 성과가 일부 달성되지 못했거나, 달성된 성과의 지속가능성에도 일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상태
미흡	10점 미만	전체적으로 사업이 기술적 또는 사회·경제적으로 실패한 것으로 판단되는 상태로서 당초 계획했던 성과의 기초적인 부분만 충족되고 대부분이 달성되지 못했거나 못 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태

(3) 평가 기준

① 적절성(Relevance)

- 사업의 목적과 구성이 수원국의 개발 우선순위, 수요 및 정책과 일치하였는지, 초기 사업설계와 구성이 적절하였는지, 지원환경을 고려하고 변화에 대응하였는지 등에 대해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한다.
- 적절성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 개발우선순위, 수요에 대한 적합성이며, 수원국 정부 전략 뿐 아니라 지역사회, 수혜자 차원의 수요, 우선순위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한다. 특히 수혜자 수요분석 시 SDG의 핵심가치인 포용성, 평등을 고려하여 대상국가 및 지역 내 소외계층의 수요를 분석하여 반영하였는지도 파악한다.
- 사업설계 및 구성은 위에서 검토한 개발우선순위와 수요가 계획단계부터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PDM 상의 단계별 지원목표가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하고 논리적 비약은 없는지 등 사업계획의 체계성과 품질을 검토하는 항목이다.
- 적절성에서는 사업 계획과 수행 단계에서 다양한 지원환경을 고려했는지, 사업발굴/계획-이행-종료 등 지원기간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개도국 환경의 변화와 위험을 사전에 파악, 관리하고 대응하였는지도 평가하여 기술한다.

< 적절성 평가 관련 주요 질문 >

1. **개발전략, 수요, 우선순위와의 적합성:** ▲사업목적 및 내용이 수원국 개발전략 및 수혜자의 수요, 우선순위와 부합하는가? ▲사업설계 시 수요분석을 실시하여 내용에 반영하였는가? ▲취약계층의 수요를 분석하여 사업에 반영하였는가? ▲SDG 등 국제사회 개발목표에 부합하는가? ▲우리 정부의 상위개발전략, 시행기관 전략에는 부합하는가?*
2. **사업 설계 및 구성 :** ▲PDM (Project Design Matrix) 상 활동, 산출물, 성과, 사업목표 등 단계별 사업논리가 체계적이고 달성가능한가? ▲시행기관의 기술적·제도적·재정적 역량을 고려할 때 실현가능한가? ▲주요 이해관계자의 우선순위가 사업목적, 사업논리, 이행수단에 반영되어 있는가?
3. **지원환경의 고려, 위험관리 및 환경변화 대응 :** ▲사업설계와 수행에 있어 경제, 사회, 환경, 평등, 정치, 문화, 역량 등 다면적 지원환경을 분석하고 고려하였는가? ▲사업기간 동안 발생한 환경 변화(분쟁 및 내전, 팬데믹, 자연재해, 수원국 정책 및 경제환경)에 따라 유동적으로 대응하였는가? ▲사전적 위험분석, 대응방안에 따른 관리가 이루어졌는가?

○ 평가자가 위의 여러 가지 항목들에 대한 정성적 판단에 의하여 평가 등급을 부여하되 그 사유를 명확히 기술함으로써 등급 및 점수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다.

② 효율성(Efficiency)

○ 효율성은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자원을 얼마나 잘 활용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즉 사업에 투입된 비용, 기간, 인력, 기자재 등의 자원이 가장 비용효과적인 방식으로 산출물, 성과, 영향력 등 단계별 결과물로 변환되었는지를 보는 '경제성'에 대한 평가이다. 계획한 기간 및 비용 내 사업이 추진되었는지, 혹은 불가피한 경우 사업예산과 기간이 적절히 조정되었는지도 파악한다.

<효율성 평가 관련 주요 질문>

1. **사업 비용의 효율성 :** ▲사업 기획 시 계획한 비용 범위 내에서 사업이 완료되었는가? ▲항목별 자원배분은 적절하였는가? ▲필요시 항목 간 적절한 예산 전용이 있었는가?

- 2. 사업 기간의 효율성 : ▲각 단계별 일정이 계획된 일정대로 잘 진행되었는가? ▲환경변화 및 사업지연 시 문제해결을 위한 대응조치가 있었는가?
- 3. 투입대비 성과 달성 정도 :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현재 지원수단과 방법이 최적의 수단인가? 혹은 더 나은 대안이 있는가?

○ 평가자가 위의 여러 가지 항목들에 대한 정량적 또는 정성적 판단에 의하여 평가 등급을 부여하되 그 사유를 명확히 기술함으로써 등급 및 점수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다.

③ 효과성/영향력(Effectiveness/Impact)

○ (효과성) 사업기획 시 마련한 성과평가지표 상 산출물 목표, 성과목표의 달성여부와 정도를 사업 완료 시점에서 평가한다. 산출물과 성과를 구분하여, 어떤 항목이 달성되고 어떤 항목이 달성되지 못하였는지를 검토한 후, 향후 사업에 대한 교훈 도출을 위해 목표 달성/미달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이었던지도 상세히 기술한다.

- 성과가 단기성과, 중장기성과로 구분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평가 시점에 중장기성과가 아직 측정가능하지 않다면, 산출물과 단기성과 달성 여부 및 정도만을 평가하고 중장기 성과에 대해서는 달성가능성과 달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요인을 파악하여 제시한다. 이를 통해 시행기관은 향후 사업의 중장기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개선할 사항 등을 파악할 수 있다.
- 목표달성/미달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내부요인과 외부요인으로 구분 가능하다. 내부요인에는 사업관리, 인력, 예산, 제도적 측면, 계획 변경 등이 있고 시행기관이 통제가능한 영역이다. 반면 정권변화, 자연재해, 분쟁, 팬데믹 등 외부환경적 요인은 대부분 시행기관의 통제 밖의 영역에 해당한다. 외부요인을 파악할 때는 통제가 불가능하지만 불가피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있었는지를 평가하는데 중점을 준다.
- 사업의 성과달성 여부를 측정할 때는 SDG 차원의 포용, 평등 관점을 반영하여 사업혜택의 포용성과 평등한 배분 여부도 파악한다. 즉, 사업을 통한 혜택이 수혜그룹 중 특히 취약한 계층(여성, 아동, 노인, 소수민족, 난민·국내이주민, 장애인, 저소득층, 소규모 농가 등)에게도 공평하게 주어졌는지, 혹은 소외되지는 않았는지를 파악하며, 분리지표를 활용한다. 아울러 평등한

혜택배분을 위해서 사업계획 시 취약계층의 수요를 조사, 분석하여 사업내용에 반영하였는지를 검토한다.

* 취약계층 포용에 대한 세부질문은 평가대상 사업이 지역사회 단위의 주민, 가구를 직간접적 수혜그룹으로 하는 경우에 주로 적용 가능함.

- (영향력) 평가 대상사업의 수행 결과 직·간접적으로 초래된 제도적, 사회·경제적, 환경적 변화 등을 의미하며, 긍정적 변화와 부정적 변화, 의도한 결과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모두 포함한다. 영향력을 평가할 때도 사업 내부적 요인으로 발생한 영향과 외부환경적 요인으로 발생한 영향을 구분해야한다.
- 단, '영향력' 기준은 실험적/준실험적 방법론을 활용하여 사업과 변화의 인과관계를 측정하는 '영향력 평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사업으로 인해 초래된 거시적이고 포괄적 변화를 검토한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해야한다.
- 단, 사후평가 단계에는 사업을 통한 거시적, 포괄적인 변화를 파악하기에는 시기상조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잠재적 영향력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대체한다.

<효과성 및 영향력 관련 주요 질문>

1. **계획한 산출물, 성과의 목표 달성정도** : ▲계획 대비 실제 산출물 달성도는 어느 정도인가? ▲계획대비 성과 달성도는 어느정도인가? ▲산출물, 성과달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2. **사업성과의 취약계층 포용성 및 형평성** : ▲사업성과와 혜택이 수혜그룹 중 특히 취약한 계층에게도 공평하게 배분되었는가?
3. **사회, 경제, 제도에 대한 긍정, 부정적 영향** : ▲사업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초래된 사회, 경제, 제도적, 환경적 차원의 긍정적/부정적/의도한/의도하지 않은 영향은 무엇 인가?

- 평가자는 사전에 설정된 성과지표에 근거한 정량적 판단 및 정성적 판단에 의하여 등급을 부여하되, 그 사유를 명확히 기술함으로써 등급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다.

④ 지속가능성(Substantiality)

- 지속가능성이란 사업 종료 후에도 사업 효과가 중·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정도를 말한다. 주로 사업 운영 및 유지를 담당하는 수행기관의 역량(인적·제도적·재정적 차원)과 사업에 대한 주인의식을 평가하고, 이를 활용하여 사업성과를 수행기관이 미래에도 지속시킬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 평가의 시기에 따라 아직 종료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실제로 사업성과가 지속되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지속가능할 것인지를 전망하는 방식으로 ‘잠재적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방안으로 대체가능하다.
- 향후 지속가능성은 주로 중간평가에서 활용 가능하며, 현재 상황이 지속된다고 가정할 때 인적/제도적/재정적/환경적/정치/사회/문화적 지속가능성이 담보될 만큼 긍정적 효과가 유지될 수 있을 만한지를 전망하는 식으로 평가한다.
- 한편, 사업 종료 후 일정기간이 지나 지속가능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시기에는 ‘계획 상 지속가능성 對 사업 종료 후 실제 지속가능성’을 비교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즉, 초기에 의도한 사업성과 지속이 사업종료 이후 계획대로 유지되는지를 비교 검토할 수 있다.
- 사업에 대한 잠재적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 역량을 마련하였는지, 긍정적인 단기 경제효과가 중장기적으로 환경파괴, 기후변화 심화 등 부정적 효과를 미치는 등 상쇄효과(trade-off)는 없는지도 평가한다.

<지속가능성 평가 관련 주요 질문>

1. **인적·제도적·재정적 대응역량 및 주인의식** : ▲사업 수행 기관의 재정이 건전한가? ▲향후 사업을 운영 관리 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정부의 예산지원계획은 명확한가? ▲운영, 유지관리를 위한 기술역량, 적정인력, 관리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사업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할 기관 역량강화, 제도개선이 있는가?
2. **사업 지속가능성(계획 對 실제)** : ▲사업 종료 이후에는 사업의 긍정적 성과가 지속되는가? ▲성과 지속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가? ▲성과지속을 저해하는 요인이 무엇인가? ▲사업계획 단계에서 의도한 지속가능성과 사업종료 이후 실제 지속가능성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종료사업) 혹은 향후 잠재적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었는가?(진행 중 사업)

⑤ 일관성(Coherence)

- 일관성이라 함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국내외 다른 국제개발협력 사업과 중복성 없이 연계되어 시너지효과를 창출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국내 ODA시행기관 사업이 ▲기관 내 기타사업과 연계되었는지, ▲타 기관 사업에 연계되었는지, ▲정책일관성 차원에서 외교/안보/환경/통상 등 ODA외 정책과 연계되는지를 평가하는 내적 일관성(internal coherence), 타 공여국 및 공여기관 사업에 대한 연계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외적 일관성(external coherence)으로 구분된다.

- 내적 일관성의 핵심개념인 정책일관성에서는 수평적으로는 인도지원-개발-평화구축 넥서스(HDP nexus) 차원에서 개발협력과 안보 차원의 충돌은 없는지를 평가할 수 있고, 그밖에 환경 분야의 물-에너지-식량 넥서스(water-energy-food nexus), 젠더-평등-기후변화 넥서스(gender-equality-climate change nexus) 등의 관점도 적용 가능하다.
 - * (예시) ▲미얀마 쿠데타로 인한 인권탄압 상황에서 대외전략과 인도적지원 ODA 전략의 상호연계성 여부 등, ▲여성의 평등한 고용 관련 국내정책과 ODA 정책과의 부합성 여부 등
- 수직적으로는 특정부처/기관내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ODA유형(프로젝트, 개발 컨설팅, 봉사단, 연수, 민관협력)간 연계성, ODA와 개발금융간의 연계성도 볼수 있다. 지역사업과 국가사업간의 충돌 혹은 중복여부도 정책일관성 평가영역이다.
- 외적일관성은 SDG 등 글로벌개발목표를 위해 다양한 공여국, 공여기관의 사업이 연계되었고 시너지효과가 있는지를 검토하는데 중점을 둔다. 인도적 지원 상황에서 혹은 특정 SDG 달성을 위해 다양한 국가, 기관, 이행주체 별로 지원대상 국가, 분야차원의 조정 및 연계메커니즘이 있는지, 상호시너지효과가 있는지를 평가한다.

<일관성 평가 관련 주요 질문>

1. **내적일관성** : ▲대상국가/지역내 타ODA 시행부처/기관 사업과 연계되는가? ▲부처 및 기관 내 기타 사업과 연계되었는가? ▲ODA 외 정책, 주요 국제규범 및 기준, 대외전략 등과 상호보완성, 조화, 부가가치를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는가?
2. **외적일관성** : ▲대상국가/지역내 타공여국/공여기관 사업과 연계, 시너지효과가 존재하는가? ▲특정 SDG 달성을 위해 국가, 분야차원의 연계·조정메커니즘이 존재하는가?

- 평가자가 위의 항목들에 대한 정성적 판단에 근거하여 평가 등급을 부여하되, 그 사유를 명확히 기술함으로써 등급 및 점수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다.

(4) 행정사항

- 각 수행기관은 소관 평가사업에 대해 동 평가등급제를 적용·실시하도록 하며, 자체 평가등급제 가이드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경우 국조실과 협의하여 필요 시 내용을 조정하도록 한다.
- 수행기관은 <평가 등급별 점수체계>를 기관별 사업 특성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개별 점수체계를 사용할 시 국조실과 사전 협의하도록 한다.

<평가등급 산정(양식)>

□ 평가대상 사업명:

평가 기준	심사 항목	배점			
1. 적절성	· 수원국 개발전략, 수혜자 수요, 우선순위 적합성, 우리정부 지원전략, SDG 목표 적합성	4	3	2	1
	· 사업 설계 및 구성의 적절성	4	3	2	1
	· 환경변화 대응 및 위험관리의 적절성	4	3	2	1
	평균 점수(a)				
○ 산정 이유					
2. 효율성	· 사업 비용의 효율성	4	3	2	1
	· 사업 기간의 효율성 등	4	3	2	1
	· 투입 자원 대비 성과 달성 정도	4	3	2	1
	평균 점수(b)				
○ 산정 이유					
3. 효과성/영향력	· 계획한 산출물, 성과 목표를 달성한 정도	4	3	2	1
	· 사업성과의 취약계층 포용성 및 형평성	4	3	2	1
	· 사회·경제·제도에 대한 긍정/부정적 영향	4	3	2	1
	평균 점수(c)				
○ 산정 이유					
4. 지속가능성	· 재정적, 제도적 역량 여부	4	3	2	1
	· 인적 역량, 유지 관리체계 여부	4	3	2	1
	· 계획 대비 실제 지속가능성	4	3	2	1
	평균 점수(d)				
○ 산정 이유					
5. 일관성	· (내적일관성) 국내 타 시행기관 사업 연계, 시너지효과 여부	4	3	2	1
	· (외적일관성) 타공여국, 공여기관 사업 연계, 시너지효과 여부	4	3	2	1
	평균 점수 (e)				
○ 산정 이유					
종합 점수 (a+b+c+d+e)					점
종합 평가 등급					